◉국토교통부고시 제2021-1439호

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중 정정

관보 제19892호(2020. 12. 7.)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고시제2020-875호(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)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.

2021년 12월 30일

국토교통부장관

관보내용	정정사항	비고
12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: [붙임2] (도면생략) [붙임2]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에 관한 사항 2. 용도지구·구역 결정(변경) 조서 ○ 개발제한구역 결정(변경) 조서 ○ 개발제한구역 결정(변경) 사유서	12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: [붙임2] (도면생략) [붙임2]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에 관한 사항 2. 용도지구·구역 결정(변경) 조서 ○ 개발제한구역 결정(변경) 조서 ○ 개발제한구역 결정(변경) 사유서	정정사유 : 개발제한구역 기정 면적, 변경후 면적 및 단위 오류사항 정정

○ 개발제한구역 결정(변경) 조서

- 정정 전

구분	구역명	위 치	면적(㎡)			비 고
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변경	개발제한구역	의왕시 전역	45,539,943	감) 443,298.1	45,096,644.9	

- 정정 후

구분	구역명	위 치	면적(㎡)			비 고
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변경	개발제한구역	의왕시 전역	45,515,736	감) 443,298.1	45,072,437.9	

※ 기정은 경기도 고시 제2019-170호(2019. 8. 12.)임.

○ 개발제한구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- 정정 전

구분	위 치	면적(㎢)	변 경 사 유
변경	의왕시 월암동 일원	감) 443,298.1	•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으로 중산층의 주거불안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건설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함

- 정정 후

구분	위 치	면적(㎡)	변 경 사 유
변경	의왕시 월암동 일원	감) 443,298.1	•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으로 중산층의 주거불안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건설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함